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00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 : 홍성국 · 홍기원 · 이병훈

한준호 • 민병덕 • 홍정민

이원욱 • 이용우 • 강선우

홍익표 · 정필모 · 오영환

김병욱 • 이장섭 • 김성주

김경만 • 윤재갑 • 임호선

윤준병 • 이수진 • 안호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개정된국제보험회계기준(이하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업계는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음.

위와 같이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책임준비금 검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법령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안 제114조 및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신설).
- 나.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 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1조, 제184조 및 제209조).
- 다.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함(안 제2조).
- 라.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기초서류상 책임준비금)

- 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 5조 및 제128조).
- 마. 일반계정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는 특별계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운용금액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안 제106조).
- 바.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변동함에 따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운용한도 산출 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제107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을 "영업권" 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책임준비금의"를 "해약환급금의"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운용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계정에"로 한다.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동, 담보권의 실행"을 "변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제114조 중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를 "평가방법 등에"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

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 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 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 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 ② 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등록하 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 탁결제원
 -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주용하다.
-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 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 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1. 제6항에 따른 전환·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 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항·

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28조제2항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을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임에"를 "선임·해임에"로 한다.

제18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직무
-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209조제1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을 "보험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7. 제181조제3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18. 제184조제5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 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2. 제18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 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개정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제3호,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해당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해당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보험업법」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 또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14
표시된 자산에서 <u>미상각신계</u>	<u>영업권</u>
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	
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 20. (생 략)	15. ~ 20. (현행과 같음)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	
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	3
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u>책임준비금의</u> 산출	<u>해약환급금의</u>
방법서(이하"기초서류"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_		

4. (생략)

-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 <u>별계정에</u>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 한다.
-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
 1. -----

 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동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4 (원웨과 기수)
4. (현행과 같음)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
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자산운</u>
용 손실의 부담주체, 운용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별계정에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①
서 삭제>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신 설>

<u>2.</u> (생 략) <신 설> _____

-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 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

 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 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 험회사가 취득·처분하는 자산 의 <u>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u> <u>자금차입의 제한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3년</u>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u>평</u> 가방법 등°	 <u>1</u>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 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 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

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 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 권"이라 한다)의 발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 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
 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
 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
 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
 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
 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 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 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 <u>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u> <u>행</u>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 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 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 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 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 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 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제 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 항을 준용한다.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

-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

의

- ② 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 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금 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

 라 인가를 받은 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 3항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 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 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 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 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 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 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 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 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 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 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 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 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 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 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 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 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 보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 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 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 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 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 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 지에서 하여야 한다.
- 1. 제6항에 따른 전환·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 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 내
-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 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 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 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

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 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 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 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 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 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한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 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
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신 설>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 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 해약환급금-----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 따 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1 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u>을 정하여</u> 처분을 명할 수 있 다.

- ① (현행과 같음)

- 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 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 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1조(보험계리) ① (생 략)
 -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 (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 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 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와 위탁·선임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 레101ㄱ/ㅂ취메리) ① (취레미 기
제181조(보험계리) ① (현행과 같
승)
②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
무를 총괄하는
 @
③
<u>선임·해임에</u>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
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제20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②·③ (생 략)
- ④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

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직무

-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 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 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1. ~ 15. (현행과 같음)
-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7. 제181조제3항에 따른 선임 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18. 제184조제5항에 따른 선임 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 ⑧ (생 략)

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 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 을 준 경우
- 2. 제18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 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 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⑤ ~ ⑧ (현행과 같음)